

1. 서론

1.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및 활동은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이 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NGO, 민간단체, 시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사업, 지자체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사업, 시민들의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는 2012년 3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해에 부모커뮤니티, 마을미디어,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등 400개가 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개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리적, 사회적, 가족적, 정치적 유동성(도시화, 양극화, 핵가족화, 정당활동 등)으로 인해 깨져버린 공동체, 마을의 복원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평균 지속기간이 3년 정도(신경희, 2012)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의 공간적 범위, 주민들 간의 불화, 사업단위 목표설정으로 종합적인 공동체 가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으로 노동 활동과 소비를 비롯한 활동이 영위되는 곳으로, 주민 개개인은 개별적인 행위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그들의 일상은 개인과 환경, 마을의 문화와 전통에 기초하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구조 속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권병욱, 2011). 따라서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마을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복잡한 요소들, 즉 마을구성원 각자의 특성과 구성원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가치,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의 창조적 융합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마을'의 마을공동체를 유지시켜온 조선시대 향약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향약은 송대의 '남전여씨향약', 주희의 '증손여씨향약'이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에 의해 도입되어 조선에 맞게 변형된 공동체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1392년 태조가 '향현' 시행, 성종 '향음주례' 시행, 중종 '여씨향약' 보급(1517), 명종 '예안향약'(1556) 등으로 시행되다 선조 때 율곡의 '해주향약'(1577)이 보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유성선, 2005). 초기의 향약은 관 주도적인 점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제기되어 명종 이후(1545)에는 각 지방 실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향약이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은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향약을 권장하면서 영조와 정조시대는 향약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특히 정조는 1797년 '향례합편'을 만들어 향약의 기준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만큼 전국적인 마을공동체의 규약으로 지속되어왔다. 이에 본 논문은 향약을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초기 설립 목표에서부터 향약의 운영과정을 밝혀 500년 이상 지속된 운영의 특성 및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사례지 선정 사유

본 논문은 마을공동체인 향약의 운영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일 것으로 판단, 고현향약을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고현향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정극인이 학당을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1475년부터 마지막 향안이 남아있는 1901년까지 약 50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이고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 초기 정부 주도의 향약이 실현되고 있을 때 고현향약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지방에서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강오(1986)는 고현향약의 사료를 조사한 결과 조선 최초의 향약이면서 일반적인 정부 주도의 향약은 현 단위(지금의 시군 단위)에서 실시되던 것과 달리 고현(현재의 동 단위 혹은 자연부락·마을 단위) 내에서만 자치적으로 실시된 순수한 민간향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현향약은 초기 사대부로만 향원(향약의 구성원)이 구성되었으나 17세기부터는 중인들의 참여(1618년 동안 기록, 17세기 말(1671년 동중좌목 기록)부터는 서얼까지 참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향약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료(총 36건, 1910년 이전 자료 19책)¹⁾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현존하는 자료를 보면 창시자 정극인의 서문과 부흥자 정세립의 발문이 포함되고 향약의 구체적인 규약을 담은 ‘입의’, ‘약조’, ‘동안’이 있고 참여자들의 리스트인 ‘좌목’이 있다.

3.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고현향약의 운영 과정을 통해 운영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공동체를 고찰하는 방식은 물리적 환경, 주민참여방법, 주민조직 체계, 주민자치관리, 공동활동으로 분류하여 고찰(최정신, 2008)하거나, 커뮤니티 관점(정재희, 2012), 자치관점(안현찬·박소현, 2012), 의사소통 측면(권용혁, 2002)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정형화된 분석틀이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약을 구성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람들은 향약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신분, 규모, 다양성을 보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목표나 가치, 원칙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동체 운영을 위한 구성원, 관리를 위한 규약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고현향약의 운영과정으로 대별되는데, 구체적으로 조직구성, 의사결정방식, 운영자금, 관리, 물리적 규모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소통을 통해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 등을 정리하여 공동체사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한다.

II. 향약 관련 다양한 접근과 공동체 관점의 가능성 고찰

1. 향약 관련 기존 연구 고찰

향약 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지방행정·자치 관점에서 다룬 연구와 사회과학적 접근의 복지, 윤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 먼저 향약을 지방자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박경하(1993), 우홍준(2011)이 있다. 박경하(1993)는 율곡의 서원향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8세기 주현향약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김홍득이 보은에서 시행한 향약조목을 분석해 당시 수령이 사회변동(농촌사회의 분화와 몰락, 신분제의 동요)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현향약은 1692년 사적인 조직계를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양반, 상민 모두를 통치 대상으로 하는 관 주도의 향약이다. 향약 구성은 향약서, 향약조목, 향약후부록, 별록유민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향약조목은 양반도호, 향리들의 비리규제를 담고

1) 고현향약 관련 자료는 동안(1602~1617), 동안(1618~1622, 1623~1640), 동중좌목(1666), 동안(1677), 고현동약좌목(1683, 1690), 동계좌목(1698, 1701), 태산향약안(1705, 1704), 동안(1713, 1720), 동안(1720), 동안(1737), 동안(1741), 동안(1747), 동중좌목안(1755), 동계안(1758), 동안(1762, 1800, 1812), 고현향약안(1801), 수정동안(1830), 동학당수계안(1854), 고현동각수계안(1854, 1901, 1902)임(정읍문화원, 2012).

있고, 향약후부록은 수령질사를 강조하고 향약의 운영을 설명한다. 별록유민인은 농민들에게 수리를 경계하고 권농의 필요성과 소농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도로 농업공동체적인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향약조목의 내용은 신분제 질서의 유지와 농업공동체적 생활의 권장과 관련한 항목, 향촌비리 규제사항으로, 군역, 환곡, 사채 등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양반, 부민, 토호, 향리들의 하층민에 대한 침탈행위를 막고자 하였다.

우흥준(2011)은 조선후기(18세기 후엽~19세기 후엽) 관변자치제도인 '수령향약'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8세기 중엽부터 통치체계가 사족지배체제에서 관권지배체제로 바뀐에 따라 향약은 수령향약이 일반화되었다. 향약의 업무가 수령의 일반 행정업무에 포함되어 향약의 본래 풍속업무와 일반 행정업무 간 상호 통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령의 교체 때마다 중단 및 지침변경으로 지방사회의 안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수령의 부정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향약을 연구한 사례는 이해숙(1990), 김용덕(1990), 최문형(2002) 등이 있다. 김용덕(1990)은 향약의 성격에 따라 향규, 공계, 주현향약, 동계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향규는 향중지규(鄉中之規)의 준말로 16세기 지방세력의 향촌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향소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말하고 동계는 촌민의 지배, 즉 향권을 위하여 사족에 의해 조직·운영된 것이고, 촌계는 유구한 전통을 갖는 자생적인 주민의 생활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동하는 자치적인 조직이며 주현향약은 임란 이후 수령이 지역사회의 상하 전체 주민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동계의 확대판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김기향약을 사례로 그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약입, 향입의 분리, 수령권의 강화, 개선된 민중의 처지, 공동체적 관계의 유지·협동이 권장되고 연대

책임에 의한 치안, 재생산조건이 마련되도록 두레, 혼상, 불시의 재난 등에 전통적인 미풍인 이웃돕기가 권장되었고 공동체적 관념이 권장되었다.

최문형(2002)은 향약을 공동체주의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는데 공동체윤리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당파주의나 가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였다. 향약의 공동체윤리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심이나 사욕과 같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 자신을 포함한 보다 더 큰 관계를 의식하고 그에 따른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율곡의 향약은 효제충신인의(孝悌忠信仁義)와 같은 덕목을 서로 권하는 덕업상관(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도덕을 체질화시키는 도덕사회, 인간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및 사시사철의 예속을 서로 지켜나가는 예속상교(禮俗相交), 사회, 가난, 질병, 재해 등을 당할 때 서로 도와주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을 통해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술한 율곡향약의 근본 취지를 현대 정보화 사회의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추어 재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 다룬 곽효문(1995)은 조선시대 향약의 시행방법(자치조직, 입약절차, 집회, 경제활동 등)과 기능(덕업상관,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휼)을 검토하여 복지행정기능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환난상휼사상에 대한 특성, 내용, 방법 등을 통해 복지행정의 재정수단, 서비스 수준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공동체정신을 살려 잘 운영해나간다면 이상적이고 건전한 지역복지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향약은 조선시대 지방행정·자치의 수단으로, 유교사회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규약으로, 지방복지의 한 방편으로 연구되어왔고 본 논문에서 다

루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다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향약의 가능성

향약을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데, 한도현(2007)은 기존 연구에서 향약의 공동체적 측면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향약을 예치공동체운동으로 명명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향약의 조직적 특성을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개방적 성격으로 호혜성, 상하신분의 교통, 개방적 권위, 지도층의 사회적 의무 등을 지적하였고 이는 열린 수평적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폐쇄적 측면으로는 신분적, 사대부 중심, 관제운동화를 지적하면서도 향약을 사회참여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한도현(2007)은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를 들고 있는데, 연구자는 향약을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향약의 정의와 4대 덕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향약의 기틀을 잡은 율곡의 ‘서원향약’에 향약에 대한 정의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향약이란 옛날 것이다. 같은 구역에 사는 사람이 도적을 막는데 서로 돕고 병이 들었을 때 서로 구제하고 출입할 때 서로 붙들어주며, 또한 자제들로 하여금 개인이 세운 글방, 마을에서 세운 글방, 주에서 세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효제의 의리를 다지게 한다. 삼대의 다스림이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웠던 것도 진실로 이에 연유한다.” 이를 보면 ‘같은 구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명시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제의 의리’라는 공동가치의 형성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향약은 4대 덕목을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규약으로, 덕업상권(德業相勸), 예속상교(禮俗相交), 과실

상규(過失相規), 환난상휼(患難相恤)을 제시하고 있다. 4대 덕목 중 덕업상권의 내용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덕이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어른에게는 공경하며, 도로 몸을 다스리고, 예로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분노와 욕심을 억누르고 색을 멀리하며 선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초상에는 슬픔을 다하며, 종족과 화목하며 이웃과 사귀고 친구를 가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며 바른 도로 자식을 가르치고 근엄한 법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며, 가난할 때에도 청렴한 지조를 지키고 부유해져도 예로 사양함을 좋아하는 따위를 이르는 것이다... .. 업이란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며 예를 익히고 수를 밝히며 집안을 엄숙하게 다스리고 과정을 신중히 하며, 살림살이를 구차스럽게 하지 않고 남을 구제하되 인(仁)을 행하며,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며, 환난을 구제하고 널리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선을 하도록 인도하고,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고, 대중을 위하여 일을 성사시키며, 서로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며, 이로운 것을 일으켜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관직에 있어서는 책임을 완수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해주향약: 345).

덕업상권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체의 목표로 ‘덕’과 ‘업’을 제시하였고 공동체의 공동가치인 효, 제, 충, 신, 예 등을 기술하고 공동체를 ‘근엄한 법’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공동체 상호 호혜적 관계로 ‘남에게 선을 하도록 인도하고’, ‘환난을 구제하고 널리 은혜를 베풀며’ 등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조적인 프로그램인

상훈과 교육, 상호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향약은 덕업상권이라는 마을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실상규와 예속상고, 환난상훈을 제시하고 있다. 예속상고는 덕업을 이루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풍습을 규정하고 환난 상훈은 덕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 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구체적인 활동을 규정, 과실상규는 구성원들 간 덕업상권과 예속상고, 환난상훈의 실천 여부를 평가 및 피드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향약은 특정 공간에 국한된 공동체 약속으로 덕(德)과 업(業)이라는 공동가치가 공동체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와 규(規)제 및 훈(恤)의 규약이라 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향약은 마을공동체의 약속·규약으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인 협력, 협동, 나눔, 화합, 교육의 장으로써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하였기에 마을공동체라고 명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III. 고현향약의 목적 및 운영 특성

1. 고현향약의 목적

본 절에서는 고현향약 자료를 통해 공동체적 관점에서 향약의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현향약은 1475년 정극인이라는 마을의 장로가 창설하였고(동안, 1475), 1510년 예조좌랑을 지낸 송세림이 중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관 주도의 창설이 아닌 마을에서 사대부 주도로 창립되었다.

고현향약의 목적은 ‘마을학당을 세워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법을 엄히 하고 또 향음례를 베풀어 이웃이 화목하는 규칙을 세우고자 함이다(동안, 고현동약좌목, 동중좌목의 立議에 표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약의 4대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고, 환난상훈을 제시하였다. 4대 덕목 중 덕

업상권은 유교의 수신(修身)뿐만 아니라 덕업을 권장하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실상규는 의리, 향약을 지키는 일, 수신으로 구분하였고 환난상훈은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로 규정하였다.

향약을 시행하는 목적과 운영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동안’은 오늘날 마을규약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약은 ‘동안’을 규정하여 자세한 운영방향을 설정하되 10년마다 개정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동안, 1741). 현존하는 고현향약의 동안은 ‘동중좌목’, ‘고현동좌목안’, ‘태산향약안’, ‘고현향약규례’가 있다. 이들은 마을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향약의 실행방향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2. 고현향약의 물리적 특성

향약이 실시된 고현동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태인면 거산역 근처로 사방 1km 이내의 규모로 추정된다. 고현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칠광도를 보면 무성서원과 그 주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원촌마을, 문서를 보관한 장소인 동각이 소재하고 있는 남전마을, 가옥이 밀집한 송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적 규모가 반경 1km로 현재 동 규모 혹은 아파트 단지 규모 정도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3. 고현향약의 구성원 특성

고현향약의 구성원은 일정한 가입절차를 통해 선발되었다. 회원의 가입절차는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장(향약의 수장격임)이 계원들의 동의를 묻은 후 결정되었다.

〈표 1〉은 현존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향약에 참여한 인원을 집계한 결과다. 이를 보면 향약의 구성원은 초기 72명에서 시대적으로 증감은 있으나 100~300

그림 1 _ 고현향약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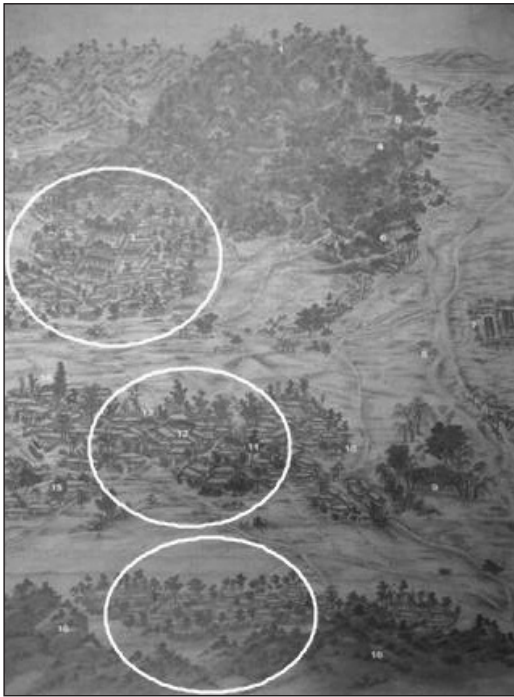


표 1 _ 고현향약의 시대별 참여인원 추정

연도	구성원	출처
1602	사대부 72명	동안
1618	사대부 298명	동안
1666	사대부 100명	동안
1683	사대부 158명	고현동약좌목
1671	총 306명	동중좌목
1755	총 232명	동중좌목안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당 남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구성원을 평균 3명으로 추정하면 대략 1천 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회원은 사대부 중심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중인, 서얼도 가입하고 있다. 1618년 좌목에서부터 중인과 서얼도 회원자격으로 입회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천민은 향약의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혜택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었다. 1666년 동중좌목에는 상하계가 함께 기재되었는데 상계

는 사대부, 하계는 서얼과 중산층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1704년 작성된 ‘태산향약안’에는 양반과 일반 백성이 상하계의 형태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시기의 향약은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약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704년 ‘태산향약안’의 ‘좌목’에 의하면 향약 참여자는 가장 나이가 많은 78세에서 27세까지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27세의 최연소자가 주목되는데 이 나이는 결혼 후 10년쯤 지난 때로, 향약구성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고현향약의 운영 방법

고현향약의 운영 방법은 운영 기구, 인력, 재정, 의사결정, 운영회의 측면으로 정리하였다(표 2) 참조. 운영 기구 및 방식은 교육기관인 학당, 태산서원, 무성서원, 송정, 유상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은 계장(다양한 계조직의 대표), 약장(향약의 대표), 직월(선약을 기록하고 행정업무), 계유사(공동 재산 관리인)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상시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을 주도하였다(고현향약규례, 1808). 17세기 초 향약의 주도적인 운영 인물들이 태산서원(훗날 무성서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원에서 향약의 모임이 일시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향약 자료 및 동의 공동재산을 보관하였다.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론 중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토론이 공격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자제하는 조항을 넣는가하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할 경우 제재향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수의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닌 듯하나 근래 마을만들기에는 토론방식을 규정해놓는 경우가 드문 것과 비교한다면 고현동의 경우는 매우 진

표 2_ 고현향약의 운영 방법

내용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향약운영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향약 관련 문서보관, 회의, 재원관리는 무성서원이 중심이 됨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및 관리인원을 선발하여 운영(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선거) • 향약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약장 1인(임기 5년 한정, 50세 이상의 덕망 있는 사람) • 주민들의 풍속교화를 위한 선악을 기록하는 직월(마을마다 1인, 임기 5년 한정, 약장과 윤번으로 교체 가능, 40세 이상의 공정근간한 사람) •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계유사 2명(임기 1년으로 교체) • 단, 임기 동안 능력이 출중한 자는 유임 가능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당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재정력 확보 • 향약의 공동재산(토지와 물건) 운영수입으로 운영 • 18세기에 관의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록 있음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은 모두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을 거듭함. 토론방식을 규정 • 결정된 사항에 불복할 경우 제재조치 규정
운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3, 9월에 개최 •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 중요한 사항 결정 • 임시회의는 계유사가 공지하여 개최 • 강신 불참 시 3개월 동안 마을 추방

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회의는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여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미리 통문(通文, 알림공지)을 하고 불참 시 제재규정을 두었으며 회의 때 의복, 음식(특히 술)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향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이 고현향약의 경우 매우 이색적이다. 1683년 고현동좌목안과 숙종 39년(1713) '동안' 기록을 보면 공동물건과 공동토지를 이용한 운영수입을 기록하고 있고 18세기에는 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록도 있다. 공동재산은 관혼상제에 필요한 상여, 갓 등이다. 공동재산과 토지는 동각에서 관리하였는데, 동각의 사환이 관습적으로 인근 고현내장의 미곡상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등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였다. 동각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동학당전답안(1859)'을 보면 동학당 소유의 전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 5,200평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향약의 경제력이 18세기 후반 약화된 것을 감안한다면 17~18세기 중반까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숙종39년(1713) '동안'의 기록을 보면 동의 공동물건을 사용할 때 이용 가격 및 파손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물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공동재산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예속상고 관련 행사, 환난상홀에 필요한 재원, 향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였다.

IV. 고현향약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원리

1. 고현향약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

고현향약은 동안에 규정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 활동은 모두 4대 덕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덕목별로 활동을 정리하였다(〈표 3〉 참조). 먼저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덕업상권은 '태산향약안(1704)' 향입조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족, 친지, 부부, 마을 주민들 간의 덕(德)과 업(業)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덕업상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예속상고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강신으로 매년 추수 후 날을 정하여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과 노인들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였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강약을 크게 열어 향약의 덕업상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사를 치렀다. 이외 관혼상제에 따른 길사와 흉사에 대비하여 향약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쌀과 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활동인 환난상홀은 매우 구체적인

표 3_ 고현향약의 활성화 활동

내용	
예속 상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사: 혼인에는 상하 각 백미 7홉, 상하계원으로 70세 이상은 강신할 때 치하례를 행할 것, 대과, 소과는 과명에 따라 술상을 차려 치하 • 70세 이상이면 치하례 • 강신(일종의 마을축제)은 3월, 9월에 할 것 • 강신은 매년 추수 후 날을 가려서 정할 것 • 3년에 한 번씩 크게 강약을 열 것 • 흥사: 부모 초상에 상하 각 백미 7홉 • 나이에 따른 선후배의 구분: 존자, 장자, 적자, 소자, 유자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켜야 할 예절을 규정(방문, 길에서 만날 경우 등) • 문안할 때 인사하는 절차 • 청하여 대접할 때 맞고 보내는 예절 • 경조사 관련 예절(길사, 흥사)
과실 상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벌: 부모에게 불순한 자(초범 태30대, 재범 관에 고발), 형제간에 싸운 자(초범 태15대, 재범 태20대, 3범 관에 고발), 가도가 패란한 자(초범 경계, 재범 관에 고발), 품행이 좋지 못한 자(관에 고발) • 중벌: 친척과 화목하지 아니한 자, 적자가 서일을 어루만지지 않는 자, 이웃 간에 불화한 자, 동료로 서로 구매하는 자, 환난에 힘써 구하여야 하는데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는 자, 마을에서 술의 힘을 빌려 제멋대로 구는 자, 어른을 능멸하는 자, 삼가조세를 내지 않고 요역 면하기를 도모한 자(중벌은 태형에 처하는데 10대에서 30대까지) • 하벌: 공회에 늦게 이른 자, 연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초상이나 장례 때 술에 취하여 고기를 먹는 자, 하계의 혼인과 상례에 참석치 않는 자(주의, 태형은 10대 미만) • 기타: 죄과는 6개월마다 보고, 강신(계원모임행사, 약조강신 등)은 3월, 9월에 시행, 사계절의 첫 번째 달 초하룻날에 선악 처리, 모일 때는 술 3잔 이상 급할 것, 복장 단정히할 것
환난 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나 화재(집수리 도와줄 것), 도적(일제히 붙잡을 것), 질병(문병, 약, 치료비, 농사 대신), 상을 당하였을 때, 외롭고 약한 향약 구성원 중의 사람이 죽고 유약한 자녀가 있을 때(실업자는 혼인에 이르기까지 돕는), 사실을 굽혀 두고 당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노역이나 금품을 거두어 모으고, 업신여기고 구제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감독책임하고 기록에 기록, 동약이 계원에게 알림) • 신증약조: 전도가 없고 노비가 없는 사람으로 염병으로서 위급하면 동에 보관한 곡식으로 5말씩 수시로 지원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재나 화재, 도적, 질병, 상을 당한 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실업자, 억울한 누명을 쓴 자, 가난한 자, 토지가 없는 자 등에게 구체적 인 구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을 보면 구성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각 상황에 맞는 지원방식을 나열하고 있었다. 특히 갑작스런 가난이나 질병을 당한 자는 어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향약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재난이나 가난, 위급사항 시 구제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렇게 향약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재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향약을 통해 사대부들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휼에 힘썼던 것으로 판단된다.

덕업상권, 예속상교, 환난상훈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과실상규는 각 행위에 대한 벌을 규정하고 있다. 벌은 하벌, 중벌, 극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벌은 견책, 10대 미만의 태형, 중벌은 마을 추방, 계원자격 박탈, 30대 미만의 태형, 극벌은 관에 고소해 행정적 처벌을 의미한다. 하벌 사항을 보면 모임에 늦은 자, 관혼상제 때 술에 취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내 화합과 평화에 저해되는 행동을 규정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중벌은 이웃 간 불화한 자, 환난상훈에 힘쓰지 않는 자 등 윤리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극

별은 불효한 자, 품행이 좋지 못한 자 등 유교사회의 행정처벌 대상이 된 사항들로 관에 넘겨져 행정처벌을 받거나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2. 고현향약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원리

지금까지 고현향약 관련 자료를 통해 향약의 설립취지와 운영과정, 운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고현향약은 김찬동(2012) 연구에서 구분한 공동체의 발달 단계[참여활성화 단계(네트워크 형성), 공동체성 구비 단계(호혜성과 운영체 형성), 준주민자치적 단계(상호작용과 사업운영), 준단체자치적 단계(대의기능과 지역경영) 중에서 준주민자치적 단계와 준단체자치적 단계의 사이로 판단된다. 이는 공동체 발달 단계에서 매우 고차원적인 형태로 현재의 공동체 복원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고현향약의 특성과 활동을 바탕으로 준주민자치적 단계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운영되는 원리를 정리하였다.

고현향약의 운영원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마을 중심의 공동가치, 개방성, 소통과 화합, 배려를 통한 나눔과 협동, 자치와 자립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고현향약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4대 덕목을 실현하여 공동체 화합, 공동유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마을학당을 세워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법을 엄히 하고 또 향음례를 베풀어 이웃이 화목하는 규칙을 세우고자 함)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약 5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이라는 물리적 규모가 설정되었고 가입절차에서도 특정 영역 안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물리적 규모를 마을단위로 설정한 것은 구성원 각자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

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경제여건이 파악되어야 구휼이 가능하고 관혼상제 행사 및 행동이 예(禮)와 속(俗)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추측된다. 변미리 외(2010)에서 조사한 서울사람들의 ‘동네’ 범위는 마포/서대문권, 금천/강북권은 ‘같은 동’이고 강남/서초권은 ‘같은 아파트’를 동네로 인식한다고 한다. 이를 보면 동네라는 공동체는 규모에 있어서 작을 수밖에 없다. 종합해보면 고현향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공간과 비물리적인 가치(공동유대감)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둘째, 고현향약의 운영 원리로 개방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향약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신분의 다양성, 임원진과 역할 순환에서 오는 역동성, 4대 덕목의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는 호혜성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해 동안좌목을 작성하고 신분과 연령의 제한을 풀어 다양성을 확보한 동시에 구성원들의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통해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호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 작용인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현향약은 마을공동체의 전체행사(매년 1회의 마을축제)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관혼상제까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정례적인 모임 및 회의(봄, 가을 강신례, 매년 전체회의, 3년 총회)를 통해 화합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배려를 통한 나눔과 협동이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의 기본원칙이었다. 환난상휼과 예속상교의 규정을 보면 지금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 특히 향약 구성원이 아니라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동재산의 대여, 경제적 지원, 사

회구제 등은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상호 호혜적 협동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의 자치와 자립의 기틀을 확립하고 있었다. 고현향약은 유교적 가치를 통한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 일은 마을 안에서 해결하는 자치력, 즉 예속상교와 과실상규로서 행정적 처벌 이전 단계인 제재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 일부 관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공용재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기에 500여 년이 넘는 동안 마을공동체 일원을 위한 구휼사업 및 예속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고현향약의 원칙과 운영, 활동을 마을, 도시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래 왕성하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시작하였다.

고현향약이 공동체 활성화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의 가치, 목표를 초기에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마을공동체운동²⁾이라는 점이다. 고현향약의 공동체 가치는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윤리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공동체 내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근래 모습과 대조적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은 사업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목표나 가치설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초기 사업적 접근이 아니라 공동체운동으로의 목표설정이 분명한 공동체일수록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때 고현향약은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둘째, 고현향약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마을 구성원들, 마을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약을 ‘같은 구역’에 사는 사람들로 명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4대 덕목의 실현을 위해 면대면 접촉과 지리적 근접성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으로 가입절차 및 운영기구 내 역할의 분담에 나타나 있다. 초기 향약은 양반 중심이었으나 사회변화를 수용하여 중인, 서얼까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운영과정에서 직월(주민들의 선악을 기록하는 자), 계유사(공동재산관리자)는 중인과 서얼이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마을어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점차 청년층까지 확장되는데 이를 현대에 적용하면 마을 내 다양한 연령층, 직업, 소득, 청년들의 고용문제와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현향약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조선시대 교화와 행정이 하나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사점은 크다고 하겠다. 마을공동체의 대동화합이 목적인 향약은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덕업상권과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어긴 자를 기록하여 상벌을 내림으로써 공동체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고현향약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란 점이다. 향약의 구성원이 많을 때는 300명에 이르렀는데 모임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

2) 김정동(2012)에서 최근 활발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운동이란 전통적인 공동체가 쇠락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푸근하고 인간적인, 자발적 복지사회를 이룩해가는 풀뿌리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회의참석에 대한 행동규정을 만들어 최소한의 분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체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의사결정인데 고현향약은 만장일치제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모두 통문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방식을 참고해볼 만하다.

여섯째, 고현향약은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재산(토지와 물건)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마을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재정문제를 고현향약은 초기부터 공동재산을 확보하여 환난상환을 시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일부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긴 하였으나 공동재산을 해마다 증가시켜 청소년들의 교육과 노약자들의 지원을 증가시킨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 마을공동체(서울 서원마을, 양구 배꼽마을, 평창 어름치 마을 등은 마을 공동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취함)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고현향약을 마을공동체로 새롭게 해석하여 공동체 운영의 특성과 원리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추후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곽효문. 1995. "조선조 향약의 복지행정기능과 의의". 행정논총 제41권 제1호, pp23-45.
 권병욱. 2011. "농촌마을에 있어서 관습경제의 변용". 김필동 편. 충남 지역마을연구: 비교와 종합. 서울: 민속원, pp119-138.
 권용희. 2002. "공동체주의와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 김수중 외 편.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pp225-272.
 김경동. 2012. "왜, 이 시대에 마을공동체 운동인가?". 자치행정 통권297호, pp26-29.

김용덕. 1990. "김기향약 연구". 향촌사회연구회 편. 조선후기 향약 연구. 서울: 민음사, pp98-145.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박경하. 1993. "조선 후기 향약연구 - 향약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변미리·신경희·백선혜. 2010.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신경희. 2012.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 서울연구원.
 안현찬·박소현. 2012.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분석: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2호, pp149-158.
 우홍준. 2011. "조선 후기 관변자치제도인 '수령향약'의 특성". 한국행정사학지 제29호, pp203-219.
 유성신. 2005. "울곡 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 철학탐구 제18집, pp5-28.
 이강오. 1986. "태인 고현 향약에 대한 연구(I)". 전라문화연구 제1권, pp271-286.
 이해숙. 1990. "조선 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이해준 저. 조선시기 촌락사사. 서울: 민족문화사, pp195-221.
 정읍문화원. 2012. 국역 고현향약. 정읍: 정읍문화원.
 정재희. 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지 제56권 제6호, pp57-65.
 최문형. 2002. "울곡향약의 현대적 조명: 공동체주의와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 제30집, pp27-52.
 최정신. 2008. "국내 계획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특성". 주택학회지 제19권 제5호, pp93-102.
 한도현. 2007. "예치공동체의 폐쇄성과 개방성". 김상준 외 편.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서울: 청계, pp57-90.

- 논문 접수일: 2013. 10. 10
- 심사 시작일: 2013. 10. 16
- 심사 완료일: 2013. 11. 21

A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Community Making at the Principles and Operations in Go-hyun Hyang-yak

Keywords: Go-hyun Hyang-yak, Village Community, Four Virtues, Operation Principles

This study is to shed new light on Hyang-yak from community operation systems which had continued for 500 years in Go-hyun dong at Jungyoup. Recently, community movement and projects are very popular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conducted lots of practice that activate to community value and economic business between dwellers. Therefore, Go-hyun Hyang-yak can give them many policy implications on community principle and operation. This study is going to review and analysis the principle and operation characters through with human resource, interrelation of community members, activities in the operation of Go-hyun Hyang-yak. In summary, Go-hyun Hyang-yak suggest that community have to start as value movement, making a shared-values in the first step, carried out on community scale, focusing on education, unanimity decision making system, self-reliance using common property, tolerance of a variety of human resource.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주제어: 고현향약, 4대 덕목, 마을공동체, 향촌규약

도시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 본 논문은 조선시대 향약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500여 년 동안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고현향약을 대상으로 번역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고현향약이 마을공동체로 운영되는 과정, 즉 구성원들의 특성, 구성원들 간의 관계정립과정, 구성원들의 공동체 활동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밝힌 고현향약의 운영 특성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마을단위로 운영되었고 다양한 신분의 구성원들을 수용하여 역할의 분담 및 순환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구인 서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마을 일을 처리하되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고수하였다. 또한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환난상호와 예속상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마을만들기는 사업단위 접근이 아닌 고현향약에서 보여주듯이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마을공동체 운동의 공간규모를 소단위로 운영하고 구성원들의 다양성 확보, 교육을 통한 화합의 장 조성, 합의에 의한 결정, 자립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